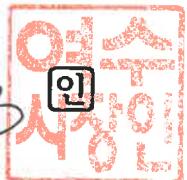


제14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2023. 11. 17.



여수시 규칙 제808호

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 여수시 규칙 제 호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2. 여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3.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동장
4.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상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

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고, 증감의 원인 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한다.

##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제14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사항증명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7. 교환하는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제19조에 따라 교환할 재산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만큼 재산의 소유권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또는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의 주소·성명
  3. 사용목적
  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2.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0호 서식
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 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2호 서식
10.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1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12. 기부채납 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 **제3장 청사 및 관사**

**제27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6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29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1호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2호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제30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체결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  
            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교환 대상 면적 (수량)	예 정 가 격	교 환 시 기	교 환 유 사	교 환 대 상 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면적 (수량)						
1건	처 분									
계	토 지	처분								
		취득								
	건 물	처분								
		취득								
	기 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sup>2</sup>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 m<sup>2</sup>이면 “일단의 면적(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면적” 란에는 2,000 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 회계명 :

(단위 :  $m^2$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면 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면 적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령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	( 토지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부	구분	색인
		중분류			속	등기부등본	
		소분류			재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산	지적도등본	
소재지 :	분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 증감 이동상황

## 사용허가 또는 대부 상황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	
회계명 :	( 건 물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구분	색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전물관리대장등본	
소재지 :	분	세분류		배치도		

연면적	취득시 : m <sup>2</sup>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도	내용	금액
	현재 : m <sup>2</sup>						
건축연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연월일	연월일		
면적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연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 사용허가 또는 대부 상황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		( 공 작 물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및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 기 부 등 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소재지 :	분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연월일	연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연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 사용허가 또는 대부 상황

CODE NO :

## 공유재산관리대장

회계명 :

## (입목증)

작성자	구분	확인	
			구분
			색인
부속서류			

관리자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주재산	
작성자				

수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식재상황	본수	(본)주			
	연월일				
	본수				
	면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연월일		연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임대연월일		전소유자		변동사항				
임대기간		등기연월일		관리청				
		등기번호						
		등기목적		가액				

##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

## 공유재산관리대장

## ( 선 박 )

작성자		확인	
-----	--	----	--

회계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分	색 인	비 고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인원
		등록번호	깊 이	m	착연월수일
		신호부자	속 력		준연월공일
		신체자료	주기외형		제조자
			정격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도	내 용	금 액	취득연월일		연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연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 증감 이동상황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연월일	목적			

## 자산 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회계명 :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자		확인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sup>2</sup>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연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Code No

##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 회계명:

## 명 칭 :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 회계명

(주식·출자에따른권리 등)

작성자

학  
인

(앞 면)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자	확인인
회계명 :	(부동산신탁수익권)			
신탁종류			법인명	
재산관리			대표자	
신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수탁자	주소	
신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	소재지	지목	수량	가격
				비고

(뒷 면)

[별지 제3호 서식]

##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종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재 용도	변경 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무
	년월일	목적	취득당시 가격				

###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 4. 용도변경 후의 활용방안

### 5. 소유권 증명

### 6. 위치도 및 지적도

### 7.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종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재 용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무
	년월일	목적	취득당시 가격			

###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 5. 소유권 증명

### 6. 위치도 및 지적도

### 7. 사진

### [별지 제5호 서식]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m<sup>3</sup>, 원)

[별지 제6호 서식]

공유재산 [ ] 사용허가부수 [ ] 대 [ ] 매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m <sup>2</sup> )	용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m <sup>2</sup>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대부·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공유재산 [ ] 유상  
[ ] 무상 사용허가서

(제2쪽 중 제1쪽)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유상  
[ ( )무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불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직인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_\_\_\_\_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_\_\_\_\_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여수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여수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5. 여수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① 제10조제1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보상한다.

②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여수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여수시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여수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수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여수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여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여수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여수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해석에 따른다.

주 : 여수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8호 서식]

공유재산 [ ] 유상 [ ] 무상 대부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_\_\_\_\_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르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여수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여수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상을 여수시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7.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대부료를 반환하며, 대부받은 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대로 대부자의 참여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대부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받는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여수시장

인

대부받는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여수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별지 제9호 서식]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행정 재산	소재지		
	위탁기간 갱신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二〇一〇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여수시장귀하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제안)서
    -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서
    -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 임차재산대장

소재지			여수시													
임 차 물 건 지	토	지목 지적			건 물	종목			부 속 물	명칭	수량					
			총면적	m <sup>2</sup>		구조										
			임차면적	m <sup>2</sup>		전체				m <sup>2</sup>						
						임차				m <sup>2</sup>						
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		계약연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금지급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금액	지급연월일		적요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별지 제12호서식]

##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 단위 :  $m^2$ , 원 )

\* 매입·매각·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일본

###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 2. 도면 등

## 평정자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 채광물 가격평정조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二〇一

소속기관명

## 평정자

성명

(서명 또는 약속)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4호 서식]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 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그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도자는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매수자에게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령」 제41조에 따른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하되,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쪽 중 제2쪽)

제10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매수자가 이 계약의 체결 후 제7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여수시장

인

매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 여수시장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 서식]

##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 교환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이하 "여수시장"이라 한다)와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여수시장과 교환대상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여수시장과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차금)** 여수시장(또는 교환대상자)은 교환대상자(또는 여수시장)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차금 금원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여수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여수시장과 교환대상자가 기명捺印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교 환 자

여 수

시

장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여수시장은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서식]

##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여수시장

인

양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 여수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서식]

##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불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여수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 ○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的 청구에 따라 자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 또는 “수탁자”的 승낙을 받은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해마다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

여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捺印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불의 1 신탈재상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二〇一〇

####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연수시장

(91)

## 수 탁 자 (“수탁자”)

주 个 :

삼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별지 제18호 서식]

###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불임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의자인 여수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 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 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的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的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밖에 위와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 ② “위탁자”的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종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을 또는 종료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的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사용하려면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증정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5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6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불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二〇一九

## 위탁자 겸 수익자 (“위탁자”)

여수시장

(인)

## 수 탁 자 (“수탁자”)

주 소 :

상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 구조 및 용도:

##### 면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 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既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 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 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 ·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대부료, 그 밖의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 · 보존 ·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항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여수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의자
-----	---	-----

인

수탁자	인	명
-----	---	---

인

법	주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여수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별지 제20호 서식]

#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해당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원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에 기성고(既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재산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 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운용)** ①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 그 밖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차입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채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인

수탁자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여수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 서식]

## 공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既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자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자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 · 관리 ·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 · 보존 ·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하는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할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③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여수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인

수탁자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22호 서식]

##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주소

성명

귀하

## 여수시장 (직인)

( 단위:  $m^2$ , 원)

재산소재지(읍면동)	지번	지목	총 면적	대부면적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여 매우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여수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여수시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 ]사용료  
[ ]대부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m <sup>2</sup> )	납부액	신청사유	감면형식	비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m <sup>2</sup>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경우							

전액감면

% 감면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 ] , 대부료 [ ] 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공유재산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m <sup>2</sup> )	신청사유	분납방법	이자율
	소재지	지목	면적			개월 이내 ( )회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나.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경우 ( )년에 ( )회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제3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 [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 기부채납 신청서

### 1. 재산의 표시

(단위 : m<sup>2</sup>, 천원)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2. 기부자의 주소 :

성명 :

### 3. 기부의 목적(구체적으로 기입)

### 4. 위치도 및 지적도

-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첨부

### 5. 사용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 청사신축계획서

### 1. 구 청사현황

위치						
여건	인구수	직원수	수용기관			
대지	지목	면적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건물	구분	본 건물	부속건물			
	연면적					
	구조					
	건축년도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2. 신축계획

위치						
신축사유						
규모	대지( m <sup>2</sup> )	(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m <sup>2</sup> )	계	본관	부속건물		
총사업비 (백만원)	계	본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재원계획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신축단비 (백만원)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 3. 추진계획

### 4. 사진 및 위치도

[별지 제27호 서식]

##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위 치		취득일자	
면적	대 지	$m^2$	구 조
	건 물	$m^3$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8호 서식]

##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적		비고
			대지	건물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별지 제29호 서식]

##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0 월 20

신고인 (인)

##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0호 서식]

## 서 약 서

관사소재지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해 있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혜가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운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운다.

二〇一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m <sup>2</sup> )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사용요율	연간 사용료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는 경우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 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별지 제32호 서식]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 1. 재산의 표시

소재지(읍면동)	지번	지목 (종목)	면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고
				주소	성명	

## 2. 발견경위

### 3. 관리상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二〇一九年

신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귀하